



노량진학원  
T. 1544-0336



온라인학원  
T. 1544-5006

## 26.1차대비 형법각론 확인학습 11회

26년 1차대비

담당 : 임종희 교수

cafe.naver.com/impaper64

### ● 형법각론 확인학습 (제11회) ●

※ 다음 지문을 읽고 O·X를 표시하시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2. 甲이 乙과 합동하여 甲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乙은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乙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자, 이에 피해자가 위 가방을 꼭 붙잡고 이를 탈환하려고 하자,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乙이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위 가방을 붙잡은 채 甲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3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를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어서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
3.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흥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흥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단순강도에 해당하는 준강도가 된다.( )
4.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5.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율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 20만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터를 우발적으로 가져간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6. 반항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폭행·협박이 있을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협박이 있을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한 다.( )
7.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주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고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甲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8. 술집 안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술값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강도살인죄에 해당된다.( )
9. 여관에 투숙객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숙박할 방을 안내하려던 여관 종업원을 2층 객실로 끌고 들어가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현금과 금반지를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의 현금을 꺼내간 경우, 여관 종업원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와 주인에 대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위 2죄는 실제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10. 강도가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경우,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11.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감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된다.( )
12. 절도범인인 甲이 피해자 乙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한 지 10분가량 지나 乙의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뒤쫓아 온 乙에게 붙잡혀 乙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乙을 폭행하였다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
13.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 )
14.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빙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
15.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16.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노량진학원  
T. 1544-0336



온라인학원  
T. 1544-5006

## 26.1차대비 형법각론 확인학습 11회

26년 1차대비

담당 : 임종희 교수

cafe.naver.com/impaper64

(정답 및 해설)

1. ○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가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대판2007.12.13. 2007도7601).
2. ○ (대판2003.7.25. 2003도2316)
3. X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1973.11.13. 73도1553 전원합의체판결)
4. ○ (대판2001.8.21. 2001도3447)
5. ○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비록 위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폭행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범의하에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의 위 폭행 및 재물 취득의 각 행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상해죄와 절도죄가 인정된다) (대판2009.1.30. 2008도10308)
6. X (반항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폭행·협박이 있을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협박이 있을 곳과는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폭행·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특수강도의 미수로 처벌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 (대판1995.3.28. 95도91)
7. ○ (대판2010.9.30. 2010도7405)
8. ○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하겠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할 조치는 정당하다) (대판1999.3.9. 99도242)
9. X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업원과 주인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2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판1991.6.25. 91도643)
10. X (강도가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경우,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의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1991.6.25. 91도643)
11. X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대판1996.7.12. 96도1108)
  12. X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죄와 폭행치상죄의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1999.2.26. 98도3321)
  13. ○ (대판2010.7.15. 2010도3594)
  14. ○ (대판2001.10.23. 2001도4142, 2001감도100)
  15. ○ (대판2014.5.16. 2014도2521)
  16. X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2014. 9. 26. 선고2014도9567판결).